

# 危險管理의 一般理論과 實際

## 方 甲 淚

.....<目次>.....	
I. 序論	1. 危險管理의 機能
II. 危險과 保險의 本質	2. 企業危險管理
1. 危險의 定義	3. 家計危險管理
2. 危險의 種類	IV. 保險計劃
3. 危險에 對한 對備方法	1. 保險需要
4. 純粹危險의 分類	2. 保險市場
5. 保險의 定義	3. 企業保險計劃
6. 保險의 必須要件	4. 家計保險計劃
III. 危險管理의 概念	V. 結論

### I. 序論

先進國에서는 1920年代부터 危險管理(risk management)에 관한 研究를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近代經營學에 매우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現代企業經營에 있어서 危險管理의 基本目的은 危險의 統制와 危險發生으로부터 오는 損失의 效率的管理에 있다고 할 것이다.

企業經營에는 所與의 資源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利潤을 極大化시키는 積極的인 面과 이런 過程에서 隨伴되는 危險의 發生으로부터 오는 經濟損失을 極少化시키는 消極的인 面의 두가지 側面이 있다고 보겠다. 이 두側面은 自動車의 앞뒤 바퀴에 該當된다고 볼수 있는 것으로 어느 한쪽 바퀴만으로 企業 利潤을 極大化시킬수 없으며 이런 事實이 先進國에서는 일찍부터 認識되어 이分野에 대한 研究가 活潑히 이루어 졌고 또한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特記할 것은 危險管理에 대한 研究는 學界에서 보다는 產業界에서 먼저 着手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產學協同으로 매우活潑히 研究되고 있는 比較的 새로운 分野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年을 基點으로 시작된 第1·2次에 亘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實施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로 國民經濟의 急速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으며 그가운데서도 第 2 次產業部門의 成長이 刮目할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產業은 近來에 와서 經營合理化問題로 深刻한 苦憊을 하고 있는 實情이며 企業스스로가 自己自身의 힘으로 이難關을 打開해야하는 嚴肅한 現實에 處해 있다고 보겠다. 只今까지는 政府에서 베푸는 갖가지 特惠로 經營의 不合理性이나 前近代性으로부터 오는 弊端을 은폐할수 있었고 緩和할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現實은 이를 容許치 않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것 같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輿論이 經濟政策의 方向을 只今까지의 경우처럼 「政府主導型」으로부터 脫皮하여 「民間主導型」으로 轉換을 要求하게 되었고 政府도 이方向으로의 政策轉換을 摸索하고 있는것 같다. 이는 長期眼目으로 보아서 오늘날과 같은 不實企業의 出現을 防止하는 唯一한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企業의 體質改善이 必要하며 이에는 經營의 合理化와 前近代的 經營方法의 止揚이 이 뿐이어야 하고 이經營合理화의 一局面이 곧 企業이 當面하는 危險의 效率的 管理라 하겠다.

本論考의 目的是 先進國 特히 近代經營學의 總本山인 美國에서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危險管理의 理論과 實際를 考察함으로써 우리나라 企業의 經營合理化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危險管理의 必要性은 非單 企業의 경우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家計에도 있는 것이므로 危險管理의 考察에 있어서는 家計의 경우도 包含하였는데 이는 家計合理화의 必要性을 考慮해서이다. 企業과 家計는 相互間에 密接한 聯關係를 갖고 있는데 그一面이 곧 企業에 關係되는 株主, 經營者, 그리고 從業員이 大體로 家計의 主體가 되기도 한다는 點이다. 또한 危險管理의 原理는 企業이나 家計에 대하여 同一하게 適用할 수 있음을 여기에 強調하여 둔다.

本論考는 첫째로 危險과 保險의 本質을 考察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① 危險의 定義, ② 危險의 種類, ③ 危險에 대한 對備方法, ④ 危險管理의 對象인 純粹危險의 分類, ⑤ 危險處理의 普遍的 方法으로서의 保險에 대한 定義, 그리고 ⑥ 保險의 必須要件 등 여러分野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로 危險管理의 概念을 考察하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① 危險管理의 機能, ② 企業危險管理의 發達過程과 危險管理部의 組織 그리고 ③ 個人危險管理의 側面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째로 企業과 家計에서 效率的이며 科學的인 危險處理를 하기 위해서 危險管理의 實際의 側面인 保險計劃을 考察하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① 保險需要, ② 保險市場, ③ 企業保險計劃 그리고 ④ 家計保險計劃 등의 여러 部分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여기에는 事例도 아울러 例示하기로 한다.

本論考는 主로 第2次「소오스」를 통해서 蒐集된 資料를 基礎로 作成되었음을 添言하여 둔다.

## II. 危險과 保險의 本質

사람은 이世上에 태어나는 그瞬間부터 죽는 그時刻까지 意識的으로나 또는 無意識의 으로 끊임없이 當面하게 되는 것은 危險(risk)이며 이 危險은 바로 保險의 對象이다. 그러므로 危險管理의 研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點은 危險의 本質에 관한 考察이다.

### 1. 危險의 定義

우리말辭典을 통하여 危險의 定義를 찾아보면 「安全치 못한 것」 또는 「위태하고 험함」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保險學, 經濟學, 經營學등에서 研究對象으로하는 危險이란 이 러한 定義로는 不充分하다. 여기에서 危險의 定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Frank H. Knight는 그의 著書 Risk, Uncertainty and Profit를 통하여 測定이 可能한 不確實性(measurable uncertainty)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고<sup>(1)</sup>

Allan Willett는 어떤 所望스럽지 아니한 現象의 發生에 관한 客觀化된 不確實性(the objectified uncertainty as to the occurrence of an undesirable event)이 바로 危險이라고 하였다.<sup>(2)</sup>

比較的 最近에 이르러서 Irving Pfeffer는 確率에 의하여 測定할수 있는 個個危險의 結合(a combination of hazards measured by probability)이 곧 危險(risk)이라고 하였으며<sup>(3)</sup> 筆者の 恩師인 H. Wayne Snider는 損失에 관한 不確實性(uncertainty of loss)이라고 하였다.<sup>(4)</sup>

여기에 不確實性이란 말이 자주 使用되는데 이것은 將來에 發生할 事象에 관하여 豫見 할수 없기 때문에 조성되는 어떤 狀態를 말한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危險의 定義는 여럿이 있으나 이를 쉬운말로 表現하면 偶然的인 事故發生可能性이라고 할수 있다. 事故가 偶發的으로 發生하면 반드시 金錢的인 損失이 뒤따르게 되며

(1) Frank H. Knight,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21), p. 233

(2) Allan H. Willett,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1), pp. 9-10 初版은 1901에 있었다.

(3) Irving Pfeffer, *Insurance and Economic Theory*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56). p. 42

(4) H. Wayne Snider and others, *Risk and Insur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4), p. 4

따라서 偶然的인 事故發生可能性은 바로 經濟的 損失의 發生可能性을 意味하게 된다.

여기에서 危險의 例를 들어보면 死亡, 火災, 自動車事故, 飛行機事故, 盜難事故 등등이며 이밖에도 例舉하자면 대단히 많아 우리가 危險속에 파묻쳐 살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사람은 한平生을 살아나가는 동안 死亡이란 偶然事故發生의 可能性을 免할길 없으며 家屋이나 家財를 所有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火災發生에 대한 憂慮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고 自動車를 運轉하는 사람이나 自動車를 타고 다니거나 車道를 橫斷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衝突事故等 交通事故의 발생과 이에 따른 犠牲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飛行機를 操縱하는 사람이나 타고다니거나 飛行場近處에 사는 사람은 墜落이나 또는 空中이나 地上 衝突事故의 發生과 이로 因한 犠牲을 念慮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고 무엇이나 값진 物品을 所持하거나 所有하는 사람은 盜難事故發生의 可能性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와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危險管理의 對象인 危險이 數없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렇게 危險이 存在하고 있는 곳에는 항상 不安(insecurity)이 떠날수 없고 不安이 떠날 수 없는 곳에 危險管理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危險은 항상 一定하게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歲月이 흐름에 따라 人間의 知識에도 變化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危險의 存在를 認識하게 된다. 例를 들면 1942년 12월 2일에 美國 University of Chicago 스탠더움밀地下에서 처음으로 實驗한 核實驗과 이의 成功은 이것이 갖는 무서운 破壞力때문에 새로운 危險을 創造하게 되었으며 最近 發見한 吸煙과 肺암과의 有關性은 前에 알수없었던 危險의 存在를 새롭히 發見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現代機械文明이 發達하고 經濟가 發展할수록 새로운 危險을 創造하거나 前에 있었던 危險을 새롭히 認識하게 된다. 그좋은 例가 公害(pollution) 問題이다. 이런 公害는 最近에 생겨난 現象이 아니라 비록 그 程度에는 差異가 있다손 치더라도 分明히 오래前부터 存在하고 있었으며 이를 最近에 이르러 그 程度가 커짐에 따라 새삼스럽게 認識하게 될으로써 社會問題가 되게 되었으며 深刻한 社會 危險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 2. 危險의 種類

危險의 分類는 大體로 두가지로 생각할수 있다. 하나는 人爲危險 또는 投機危險(speculative risks)과 純粹危險(pure risks)으로 分類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基本危險(fundamental risks)과 特殊危險(particular risks)으로 區分하는 것이다.

### 人爲危險과 純粹危險

人爲危險 또는 投機危險은 사람이 本始 有する 危險을 人爲的으로 만들어 냈으로써 存在

한다. 이 人爲危險에는 몇 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로 人爲危險은 그結果가 항상 나쁜것이 아니고 어떤경우에는 좋을때도 있다. 어떤企業을 시작한다는 것은 一種의 危險을 創造하는 行爲인데 이企業活動을 통해서 損害를 볼 경우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利得을 볼 경우도 있다. 또한 企業家에게는 政府政策의 變更이 큰危險이 되는데 가령 輸入關稅率이 引上되면 輸入業者는 어떤 경우에는 損害를 볼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利得을 볼 경우도 있다.

둘째로 人爲危險은一般的으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一部 사람들에게만 끌이는 경우가 많으며 社會全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치 않다.例를 들면 一般商去來에 있어서 어떤 企業家의 損害는 다른 企業家의 利益이 될수도 있어 人爲危險이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 두 사람에게만 끌이는 경우가 많다.

세째로 人爲危險은 計畫的으로 捕捉하여 測定하기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것이므로 危險의 發生을 豫測할수 없다. 이것은 이러한 危險의 發生을 測定할수 있는 各種資料를 獲得하기 어려운 까닭이며 따라서 이런 種類의 危險이 發生하는 頻度와 發生으로 因하여 當하게 되는 被害의 程度를 科學的으로 計算할 수 없다.

이처럼 人爲危險은 利益이냐 損害냐 하는 兩面을 갖고 있으며 危險管理의 對象이 될수 없다. 이는 주로 科學的인 危險處理를 할만한 資料가 不足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保險者는 危險의 引受를 要求하는 者로부터 얼마를 保險料로 받아야 할것인지 알수없다. 社會의 으로 容納되고 納得이 갈만한 保險料를 받으려면 먼저 이러한 危險의 發生을 科學的方法에 의하여 測定할수 있어야 한다.

人爲危險에 대한 對備策은 극히 制限된 限度內에서 講究될 뿐만 아니라 그리 흔하지도 않다. 이것은 첫째로 좋지 않은 結果를 줄이면 좋은 結果의 發生可能性을 同時に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即 어떤 사람이 그가 所有하는 家屋을 賣渡하는데 損害를 볼 경우에 는 그것을 買收하는 사람은 利得을 보게된다. 또한 쌀값이 올르면 어떤 사람은 利得을 보고 어떤 사람은 損害를 본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危險을 어떤 對策을 講究하여 그 危險의 發生으로부터 오는 結果를 緩和시키거나 또는 危險發生전과 同一한 狀態로 復舊 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結果를 甘受하려고 하는 傾向이 濃厚하다. 各種 企業의 危險引受行爲는 이部類에 속한다. 純粹危險은 人爲危險과 比較하여 대체로 두가지 相違點이 있다.

첫째로 純粹危險은 人爲危險과 같이 없는 危險을 人爲的으로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既히 存在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危險이 가져오는 영향이란 항상 個人이나 社會에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만약 뜻하지 않은 火災가 發生하여 家屋이나 家財를 태워버렸다고 하면 이런 財產所有主는 莫大한 被害를 입어 再起不能狀態에 빠지게 되므로 그와 그의 家族에게 미치는 영향은 決定的인 것이며 그 結果는 被害를 입은 個人은 勿論 社會的으로 크나큰 損失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로 어떤 種類의 純粹危險은 測定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大部分의 純粹危險은 測定이 可能하다. 예를 들면 銀行被算이란 危險의 發生은 銀行과 關聯이 있는 個人은 물론 社會的으로도 莫大한 영향을 가져오는 텨可能하면 이와 같은 위험의 發生으로 因하여 생기는 좋지 않은 영향을 除去하면 좋을 것이나 이렇게 함에는 科學的인 對備策을 講究하는데 必要한 各種資料를 充分히 얻기 困難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對備策이 原則的으로 不可能하다. <sup>(5)</sup>

설사 資料蒐集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모든 危險이 各己 顯著한 差異를 나타내게 되므로 大數의 法則을 適用시켜 이런 危險의 發生을 過去의 經驗을 土臺로 豫測할 수 없다. 그러나 大體로 大部分의 純粹危險은 이의 發生을 科學的으로 事前에 豫測할 수 있다. 即 死亡이란 危險은 個個人을 指摘하여 누가 몇 살에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 수는 없으나 集團的으로 觀察捕捉하여 몇 살에 該當하는 사람에 몇 사람 죽는다는 것을 過去의 經驗을 土臺로 豫測할 수 있다. 火災危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家屋이 어느 날에 火災로 燃失된다 고正確히 指摘할 수는 없으나 科學的인 方法으로 一定한 期間내에 어느 地域에서 몇 개의 家屋이 燃失된다는 것은 豫測할 수 있다.

앞으로는 單純히 危險이라고 할 때는 純粹危險을 指摘하는 것이며 이것은 純粹危險만이 危險管理와 保險의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 基本危險과 特殊危險

基本危險이란 個個人의 原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것이 아니며 그影響도 個個人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個個人과는 無關한 原因에 의해서 發生되며 그影響이 社會的으로 크게 미치는 危險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基本危險은 社會의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社會의 變動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基本危險의 例로 技術向上으로 因한 失業, 戰爭, 인프레이션, 政治革命, 流行의 變化, 習慣의 變化 등을 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基本危險에 地震,

(5) 美國에서는 銀行破産으로 因한 預金者에 대한 被害를 最少限度로 줄이기 위해서 聯邦政府에서 保險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이 保險制度는 市中銀行인 경우에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그리고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인 경우에는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이制度에 加入한 銀行에 대해서는 破算이 되었을 경우 預金者の 預金高中 最高 20,000弗까지를 限度로 保險金의 形式으로 支給한다. 保險料는 加入銀行이나 金融機關에서 總預金高를 基準으로 이機構에 支拂하게 되어 있다.

活火山暴發, 洪水, 暴風等과 같이 自然의 變化로 因하여 發生하는 危險까지 包含할 수 있다.

이에 比하여 特殊危險은 個人的인 原因에 의하여 發生하며 그影響도 制限되어 個人과 그周邊에 局限된다. 그例로 家屋의 燒失, 船舶坐礁, 보일러의 暴發, 銀行強盜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特記할 것은 基本危險과 特殊危險의 分類는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知識, 技術, 社會環境등이 發展되어가고 變遷됨에 따라 變할수 있다. 여기에 그例를 몇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失業에 관한 危險分類의 變化를 생각하여보기로 한다. 1930年代까지만 하여도 歐美諸國에서는 一般的으로 失業을 個人的인 事情으로 起因한 것으로 믿고 特殊危險으로 取扱하였다. 왜냐하면 이當時 失業은 오로지 계으름과 能力不足으로 因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世界大恐慌을 當하여 失業이란 決코 個人的인 事情만으로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의 失業은 經濟社會制度의 缺陷이나 國民經濟의 變動過程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기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失業에 대한 問題는 大部分의 경우 個人の 것이 아니라 社會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失業이란 危險은 特殊危險에서 基本危險으로 그分類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둘째로 產業災害도 失業의 경우와 같이 特殊危險에서 基本危險으로 變化하였다. 產業革命이 일어나 工業化過程이 本軌道에 오르기 前까지만 하여도 職場에서 일어나는 各種災害는 一般的으로 被用人이나 雇用主의 過失로 起因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世紀末이나 20世紀初에 걸쳐 產業災害는 產業制度上 不可避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責任은 社會全體에서 肘 性質의 것이라고 믿기에 이르러 社會保障制度의 一環으로서의 勞災保險이나 產災保險의 理論的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째로 自動車事故로 因한 人命被害에 대해서도 勞災保險의 경우와 같이 特殊危險에서 基本危險으로 轉換하는 過程에 놓여 있다. 앞으로 自動車事故로 因한 人命被害에 대해서는 過失與否를 묻지 않고 社會의 責任으로 無條件 補償의 날이 올것이다. 벌써 어떤나라의 一部에서는 이制度를 使用하고 있다.<sup>(6)</sup>

### 3. 危險에 대한 對備方法

누구를 莫論하고 사람은 自己周圍에 危險이 存在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면 여러가지 方法을 講究하여 危險의 發生에 對備하려고 努力한다. 이 가운데 몇가지 危險에 대한 重要한 對備方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危險을 스스로 引受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方法은 危險에 대한 對備策을 全然 講究하지 않고 放置하는

(6) 그 例로 카나다의 Saskatchewan 州에서 實施하고 있는 自動車災害補償制度를 들 수 있다.

것이다. 가령 例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自己가 突然히 死亡하였을 때 當할 自己家族의 經濟難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保險料를 支拂하기 싫어서 生命保險에 加入하지 않는다. 또 어떤이는 危險에 對備하고 싶어도 危險對備方法의 하나인 保險制度가 發達되지 않아서 危險을 그대로 放置하여 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經濟的 能力이 不足한 탓으로 危險을 그대로 放置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組織的인 方法으로 危險을 自己가 引受하는 경우도 있다. 이 方法을 가르쳐 危險의 自己引受(self-retention of risks 또는 self-assumption of risks)라고 하며 광범위하게는 自家保險(self-insurance)까지로 이에 包含한다.

2) 危險의 發生에 對備하여 事前에 豫防策을 講究한다.

어떤 사람은 自己周圍에 있는 여러危險에 對備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 危險의 發生 후에 對備하는 것보다는 危險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各種措置를 취하게 된다. 어떤이는 危險發生에 對備하기 위하여 事前措置와 事後措置를 모두 같이 [同時에] 취한다. 事前措置에 置重하느냐 또는 事後措置에 置重하느냐 하는 問題는 이에 隨伴되는 여러가지 與件 特히 費用에 의하여 決定된다. 即 費用要素를 놓고 보면 어떤 個人이나 企業이 危險에 對處함에 있어서 保險에 加入하여 保險料를 支出하는 것이 危險防止施設이나 設備를 하는 것보다 經費가 덜 所要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個人이나 企業에게는 危險防止施設이나 設備를 하는 편이 長期的으로 보아서 保險料를 支出하는 경우보다 덜 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各個人이나 企業은 각자가 當面하는 危險의 種類, 그特性 그리고 그 數爻를 優重히 檢討한 다음 이런 危險에 對備하는데 있어 所要되는 費用을 參酌하여 事前, 事後 가운데 어느쪽에 置重하느냐를 決定해야 한다.

3) 危險의 發生으로 因한 損失을 最少限度로 減少시킨다.

어떤 개인이나 企業은 特定한 危險이 發生하여 이로부터 오는 損害를 可能한限 最少限度로 줄이기 위하여 各種豫備對策을 講究한다. 一例를 들어 火災의 發生으로 因한 被害의 程度를 줄이기 위하여 各種消防器具를 設備하여 놓는다. 이경우는 危險의 發生을 事前に 豫防하는 것이 아니라 危險의 發生으로 因한 損害를 最少限度로 적게 하기 위해서 對策을 講究함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4) 危險을 제 3자에게 넘겨준다.

個人이나 企業은 危險을 自己自身이 引受하는 代身에 第3者에게 넘겨준다. 이경우에 該當하는 例를 몇 가지 들어보면 自動車事故의 發生으로 運轉手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賠償責任金을 親戚이나 親舊로부터 도움받아서 支拂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어떤 請負業者가 새로운 工事を 맡게 되면 自己가 自信을 갖고 있지 아니한 部分을 다시

下請業者에게 請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第3者에 대한 危險轉嫁라고 하겠다.

#### 5) 危險의 結合으로 危險發生에 對備한다.

多數의 危險을 結合하면 危險의 發生을 正確히 豫測할수 있고 危險의 發生을 豫測할수 있으며 따라서 危險의 發生으로부터 오는 損害에 미리 對備할 수 있다. 保險이 바로 이 部門에 屬한다.

#### 4. 純粹危險의 分類

純粹危險을 大別하여 1) 人的危險(personal risks) 2) 物的危險(property risks) 그리고 3) 法的 賠償責任危險(legal liability risks)의 셋으로 分類할수 있다. 人的危險이란 어떤個人自身의 生死나 負傷 내지 永久不具에 關聯되는 危險을 말하며 生命保險과 健康保險에서 이런危險을 對象으로 한다. 物的危險이란個人, 企業 그리고 政府가 所有하는 財產이 火災나 盜難이나 그밖의 危險이 發生하여 破壞되거나 損害를 입을 可能性을 말하며 財產保險에서 이런危險을 對象으로 한다. 法的 賠償責任危險이란 第3者에게 損害賠償을 支拂할 法的 責任을 질수 있는 可能性을 말하며 災害保險에서 이런危險을 對象으로 한다. 解釋如何에 따라서는 法的 賠償責任危險을 一種의 物的 危險으로 看做할수 있는데 이것은 法的 賠償責任을 진다는 自體가 어떤個人이나 企業이 所有하는 一種의 財產인 돈을 第3者에게 支拂하기 때문이다.

#### 5. 保險의 定義

危險管理에서 絶對的인 比重을 찾이하고 있는것이 保險인바 여기에서 保險의 定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保險의 定義는 아직까지 萬人에게 滿足할만한 것이 못되어 保險學者들간에 論難이 甚한 保險理論 가운데 하나이다. 保險學은 實로 多角度로 研究되어 어떤 사람은 保險을 供給面에 置重하여 企業으로서의 保險 即 保險經營學을 論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保險을 經濟學의 一分科로서 取扱하여 保險經濟學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保險을 數理的이며 統計學的인 側面에서 論述하고 있고 어떤 學者는 保險을 保險契約을 中心으로 하는 法的인 面에 置重하여 論하고 있으며 또한 保險의 社會性을 重要視하는 階層에서는 保險을 社會政策의인 側面에서 論述하고 있다. 요즈음에 와서는 保險學을 需要者的立場에서 危險理論과 아울러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危險管理(risk management)란 側面에서 研究하는 새로운 傾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保險은 참으로 여러側面에서 多岐하게 研究되어 온 學問이다. 保險의 定義를 앞서 指摘한 各界各層의 學者들에게 異論의 余地가 없을만한 程度로 完全無缺하게 내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이러한 事實을前提로 保險의 定義를 내려보기로 하다.

保險이란 簡單히 말하여 危險의 結合을 통하여 不確實性(uncertainty)를 確實性(certainty)으로 轉換시키는 社會的 施設이라 할수 있다. 即 保險은 多數의 同質의 危險을 한 곳에 모으는 行爲인 危險의 풀링(pooling)을 통하여 個人이나 企業이 偶然의 事故發生으로 부터 當하게 되는 實際損失(actual loss)를 多數危險의 結合으로부터 얻게 되는 平均損失(average loss)로 代替할수 있다. 이런 行爲는 비단 保險企業으로서만 營爲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統計學者나 保險計理士의 힘을 빌림이 없이도 可能하다.

保險은 다만 危險結合의 原則에 立脚한 社會施設이며 이러한 危險結合을 통하여 個人이나 企業은 實際損失을 平均損失로 代替할수 있기 때문에 保險의 對象이 될수 있는 危險은 반드시 危險의 結合이 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保險供給者인 保險者의 動機는 問題視되지 않는다. 어떤 保險者 特히 保險契約者로부터의 危險轉嫁를 目的으로 하는 保險者는 利益追求가 動機가될 수 있으나 危險結合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者는 반드시 利益만을 追求하기 위하여 危險을 引受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保險者의 形態는 利潤을 目的으로 하는 株式會社일 수도있고 會社組織體를 가지지 않은 共濟會나 기타 會社組織體일수 있으며 會員을 위한 會社組織을 가진 相互會社일 수도 있고 保險을 政府에서 取扱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保險은 保險者의 法的 形態나 保險料의 支拂方法이나 特殊한 數理方法의 使用등을 基準으로 그 定義를 내릴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危險對備策으로서 實際損失을 平均損失로 代替하였다면 結果는 保險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保險, 投機, 그리고 賭博의 類似性과 差異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다. 保險, 投機, 그리고 賭博은 하가지 點으로 모두 同一하다. 即 保險, 投機, 그리고 賭博은 모두 어떤 偶然한 事故의 發生으로 富의 移轉이 이루어진다는 點에 있어서 類似性을 갖는다. 그러나 保險이나 投機나 또는 賭博은 뛰렷한 差異點이 있는데, 첫째로 이러한 行爲의 動機가 判然히 다르고, 둘째로 이런 行爲의 動機나 結果에 대한 一般社會의 認識과 態度가 다르다.

賭博行爲에 있어서는 그動機가 富의 獲得에 있으며 이를위하여 當事者들이 없던 危險을 故意의으로 만들어내며 그結果는 한쪽의 利得과 다른쪽의 損害로 나타난다. 또한 그動機나 結果는 모두 社會的으로 認定받지 못하며一般的으로 社會에서는 이런 行爲에 대하여 否定的 態度를 取한다.

投機行爲는 그動機에 있어서 賭博行爲와 同一하며 富의 獲得이 그動機가 되고 當事者들이 없던 危險을 故意로 만들어 낸다는 點에 있어서도 賭博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그 結果에 있어서 다를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兩쪽에 모두 損害일수도 있고 利得일수도 있다. 投

機去來는一般的으로 社會의 認定을 받는데 이것은 投機한 一種의 危險引受行爲는 健全한 經濟社會를 이룩하는데 必要한 것이라고 認定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投機去來를 하는 사람은 어떤 危險에 當面하게 되면 이危險에 對備하기 위하여 故意로 또 새로운 危險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即 一例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某會社株式에 投資하였다가 只今 팔려고 하는데 將次 그가 파는 株式의 價格이 올라가 이로부터 입는 損害에 對備하기 위하여 現在 時勢로 外上으로 所定의 株式를 살수 있다. 이런 경우 만약에 그가 豫見한 대로 株價가 올랐다고 하면 원래 所有하고 있던 株式으로부터 입게 되는 損害를 外上으로 사드린 株式의 利得으로 相殺할수 있다. 이를 hedging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 危險을 除去하기 위하여 일부러 새로운 危險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投機行爲는 社會에 좋은 結果를 가져온다.

保險에 있어서는 그加入動機가 賭博이나 投機처럼 利益追求에 있는것이 아니라 將次 일어날 損害를 除去 내지 減少시키는데 있다. 또한 賭博이나 投機처럼 없든 危險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既히 存在하고 있는 危險을 對象으로 한다. 만약에 保險을 통하여 대비하는 위험이 既存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結果는 法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保險行爲는 되지 못하며 이것은 保險의 成立要件인 被保險權益(insurable interest)이 없기 때문이다며 이런行爲는 一種의 賭博行爲가 된다. 保險은 그動機나 結果에 대하여 社會의 認定을 받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付保可能危險에 直面하고 있는 사람이 保險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는 賭博이나 投機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와 反對로 그가 保險을 통하여 이에 對備하였다면 그는 投機나 賭博의 要素를 減少시켰다고 볼수 있다.

## 6. 保險의 必須要件

保險은前述한바와 같이 純粹危險 發生에 대비하는 方法 가운데 하나인데 保險의 對象이 될수 있는 危險이란 다음의 要件을 具備해야 한다.

첫째로 大數의 法則을 適用시켜 平均損失을 科學的으로 正確하게 算出하기 위하여相當數의 同質의 危險의 結合이 必要하다. 換言하면 保險에서 對象으로 할수 있는 危險이란 同質性과 多數性이란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異質의 危險이 多數結合되었다고 하여 保險의 要件을 갖추었다고 할수 없으며 또한 同質의 危險이 少數結合하였다고 하여 保險의 要件를 갖추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같은 程度의 損失發生可能性에 處해 있는 同質의 危險이 多數結合되어야 한다. 얼마만한 數의 危險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付保可能危險의 種類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大體로 危

險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平均值를 얻게 된다.

둘째로 保險事故가 發生하는 때와 場所가 뚜렷하고 明確해야 한다. 单일에 어떤 危險을 保險에 걸었는데 事故가 發生하는 瞬間이 明確치 않거나 또는 일어나는 場所를 正確히 把握할수 없다면 客觀的으로 保險事故發生與否를 決定할수 없음은 勿論 保險料算出根據가 되는 統計資料를 얻을수 없다.

세째로, 保險事故가 偶然의으로 發生해야 한다. 保險對象이 될수 있는 事故란 반드시 不意로 일어나야하며 사고發生을 事前에 미리 豫測하고 時間의으로나 場所를 豫見할수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保險契約者가 故意로 保險事故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고 發生한 保險事故를 擴大시키거나 誇張시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保險事故는 어디까지나 不意의 事故이어야 하며<sup>(7)</sup> 可能한限 이것을 避하도록 努力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保險契約者가 保險事故의 發生可能性을 意識的으로나 또는 無意識的으로 增加시킨다면 結果的으로 그는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을 만들어 내게 된다.

어떤種類의 危險은 定期의이며 規則的으로 發生하는데 이런 種類의 危險은 保險의 對象이 될수 없으며 이따위 損失은 一般經營費에 包含할 性質의 것이다.

네째로 保險對象이 될수 있으려면 한번의 事故發生으로 保險集團全部에 甚大한 影響을 줄 수 있는 性質의 危險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即 大異變的(catastrophic)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런種類의 危險은 統計的으로 捕捉하기 곤란한 까닭이다. 例舉하면 景氣變動으로 因하여 不景氣가 到來하여 大量失業이 發生함으로써 이런 失業現象이 全國化된다면 統計的으로 이를 捕捉하기 매우 어려울뿐더러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 설사 事後計算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事前計算이 不可能에 가까우므로 保險料를 科學的으로 算出할 道理가 없다.

### III. 危險管理의 概念

사람이 家計活動이나 企業活動을 함에 있어 항상 當面하는 것이 危險, 그 가운데도 純粹危險이며 이危險에 對備하는 方法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純粹危險을 統制하고 管理하는 方法에 대하여 좀더 具體的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人爲危險 또는 投機危險을 研究對象에서 除外하는데 이것은 大體로 企業家의 企業活動 對象이 곧 人爲危險이며 그의 活動目的이 이危險의 創造 統制 管理에 있기때문이며 經營學에서 이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一般的으로 危險管理(risk management)란 앞서 말한대로 純粹危險의 統制와 管理의 方法論을 研究하는 學問이라 하겠다.

(7) 이에 屬하는 危險으로서는 自然의인 天災地變을 들 수 있다.

危險管理란 用語는 美國에서 使用하기 시작하였으며 그始初는 保險需要者인 企業이 企業保險의 研究를 그目的으로 한데서 찾을수 있으며 그 時期는 1929年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이에 Boston에서 全國에 흐터져 있는 큰 企業의 保險擔當責任者들이 非公式的인 會合을 가졌으며 1930年에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Financial Division에서 保險需要者의 立場에 선 保險研究會議를 開催하였고 그이듬해인 1931年에는 正式으로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에 Insurance Division을 두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美國企業史에서 처음 볼수있는 企業內에서의 危險管理機能과 保險機能의 認定이라 하겠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大部分의 企業에서는 保險을 親知나 親戚으로부터 샀으며 企業에서 危險에 대한 處理는 企業資產의 記錄, 保險滿期表作成, 保險料支出行爲, 損害發生時에는 그發生을 그들의 保險代理店에 通知하는 行爲에 그쳤다. 또한 大部分의 경우 損害가 發生하였을때 罷災調查와 保險金請求를 自體에서 하지 못하고 그들의 保險仲介人, 辯護士 그리고 公認罷災調查人을 통하여 處理하였다.

美國企業에서 危險管理의 必要性을 痛感하여 保險部를 처음으로 設置한 것이 鐵道會社였으며 이것이 1878年の 일이고 危險管理의 體制를 갖춘것은 1929年の 일이라 하겠다. 石油 精油業者나 一般 都賣業者도 比較的 일찍이 體系的인 危險管理를 하였는데 이것이 1912年の 일이다. 이밖에 百貨店이나 슈우퍼 마켓과 같은 連鎖店經營者나 海運業者도 1925年頃에는 大體로 保險取扱業務를 組織化하였고 本社에서 一括해서 다루었다. 近年에 이르러서는 企業活動의 幅이 넓어지고 그規模가 커짐에 따라 危險管理의 重要性이 加一層 높아졌고 이부 門의 責任者는 그의 任務를 圓滿히 遂行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多方面에 걸친 知識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그의 責任이 漸次 무거워져가고 있으며 또한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겠다.

### 1. 危險管理의 機能

大體로 危險管理의 機能으로서 세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로 危險이 發生하여 經濟的 損失을 가져올수 있는 根源을 發見하는 것이고, 둘째로 危險이 發生하여 經濟的 損失을 가져올 경우 個人이나 企業에게 미치는 影響의 評價 分析이며, 세째로 이런 結果를 가져오는 危險에 대한 가장 效率의며 適切한 處理方案을 研究選擇하는 것이다. 이를 順次의 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 危險의 發見

危險發生으로 因한 經濟的 損失의 源泉의 發見 即 危險發見은 調査(survey)를 통하여 可能하다. 只今까지는 이런機能이 保險會社專門家, 保險代理人 그리고 保險仲介人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며 危險管理面에서 볼때는, 多少 그들의 活動이 附保可能危險에 限定되는 幢端

이 있었으므로 危險管理責任者는 純粹危險 全般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만큼 保險會社側의 調査結果를 스스로가 補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保險會社側의 이러한 危險調査를 통한 危險調查報告書는 危險管理에 있어서 매우 重要하고 基本的인 資料가 된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危險發生의 源泉調査를 財務諸表의 分析을 통하여 하고 있다. 即 이러한 接近方法의 理論的根據는 危險이 發生하면 個人이나 企業에 대하여 經濟的이며 金錢的인 損失을 주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 結果는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등 財務諸表에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點에 있다. 例를 들어 어떤 企業이 여러 建物을 所有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貸借對照表上에 資產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資產項目에 屬하는 建物을 破壞시키거나 損傷을 입힐 수 있는 危險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이런 危險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수 있는 것이 火災危險이다. 또한 그 企業所有로 各種車輛이 있다고 하면 이런 種類의 資產에 대하여 經濟的 損失을 입힐 수 있는 危險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가장 쉽게 發見할 수 있는 危險이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危險, 衝突危險, 盜難危險등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損益計算書에 있어서도 利益이나 所得의 源泉에 屬하는 여려項目이 어떤 危險의 發生으로 因하여 利益減少나 收入減少를 招來할 수 있는가를 發見해야 한다. 即 製品의 缺陷으로부터 오는 賠償責任 때문에 오는 利益減少를 들수 있다. 또한 第3者的 財產을 保管維持管理 내지 運搬하는 企業에 있어서도 갖가지 賠償責任을 물어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諸般財務諸表를 分析하여 資產을 減少시키고 負債를 增加시킬 수 있는 要因을 發見하고 利益을 減少시키고 費用을 增加시킬 수 있는 要因을 發見해야 한다. 이경우 危險管理責任者가 當面하게 되는 難點은 資產을 管理하고 利益을 미리 豫測한 線으로 維持하기 위하여 계속 繼密히 與件의 變動을 捕捉해야 한다. 企業經營이란 恒常動態의이며 이는 企業이 關聯을 갖는 國民經濟나 世界經濟가 恒常動態의이기 때문에 이런 动態의인 變化 속에는 늘 새로운 危險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새 建物의 建立 새 营業網의 設置 새 製品의 開發 새 機械나 施設의 貸貸借, 既存商品의 新市場開拓 등등의 現象이 일어나면 이에 따라 새로운 危險이 發生하기 마련이며 危險管理責任者는 이런 經濟的 損失의 根源을 이루는 危險을 速히 發見해야 한다.

### 危險의 分析評價

危險管理의 둘째 機能은 發見한 危險을 分析하고 評價하여 危險의 發生이 個人이나 企業에 미치는 影響을 測定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는 企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企業의 財務構造를 分析하고 損失費用을 算出하여 그結果를 分析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企業의 財務構造의 分析은 最高經營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밖의 危險管理도 最高經營層과 緊密한

意思疏通이 必要하다.

一例를 들어 이危險分析評價機能을 說明하기로 한다. 美國의 어떤 小企業에서 危險管理制度를 導入하여 責任者를 새로이 採用하였는데 이企業은 短期間에 急速한 發展을 이루하였다. 이에 따라 危險管理方法도 變化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고 多樣性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危險分析을 車輛運營에 局限시킬 경우 企業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危險評價도 이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即 自動車衝突保險(automobile collision insurance)을 사는데 있어 그 企業의 資產規模가 10萬弗인 경우하고 2,000萬弗이고 剩餘金이 600萬弗인 경우가 같을 수 없다. 危險管理責任者は 企業의 財務能力과 保險料支出費用을 감안하여 過去의 保險을 解約하고 새로운 方法을 講究하였다. 即 이企業의 財務能力으로 보아 自動車衝突保險은 自家保險으로 代替할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危險에 대하여 5萬弗限度까지는 自體에서 負擔하고 그 限度를 超過하는 損害에 限하여 保險을 통하여 處理토록 措置하여 이로부터 오는 保險料支出의 輕減으로相當한 經費의 節約을 보았다. 最近에 經濟與件의 變動으로 그企業의 財務狀態가 惡化되자 自己負擔限度를 낮추었다. 이처럼 危險의 分析評價에 있어서는 企業의 財務狀態를 考慮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危險分析評價에는 危險自體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即 어떤 特定한 危險이 發生하는 頻度(frequency)와 甚度(severity)를 分析評價해야 한다. 即 危險發生의 頻度에 平均損失額을 乘하면 그危險이 企業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를 測定할수 있다. 이런 效果測定은 한 危險의 發生으로부터 올수있는 最高損害額인 PML(probable maximum loss)의 測定을 통하여 서도 可能하다. 이렇게 해서 危險別로 分析評價한 다음 企業에 미치는 金錢的 損害를 일일히 算出한 다음 保險料支出能力을 감안하여 PML이 큰 危險부터 保險이나 그밖의 方法으로 第3者에게 危險을 轉嫁시킨다. 비록 이런 危險의 發生可能性이 稀薄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發生하는 날에는 企業에 甚大한 打擊을 주게 마련이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危險自體가 恒常 變하고 그 發生頻度와 甚度가 늘 變하여 企業의 財務狀態 또한 끊임없이 變하기 때문에 危險管理擔當者は 계속 危險이 企業에 미치는 影響을 再評價해야 한다. 萬一 時間의 餘裕가 없어 이것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一定한 事業計劃表를 作成하여 定期的인 危險의 再評價를 實施해야 한다.

### 危險對處方案의 選擇

세째 機能은 各種危險에 對處하기 위하여 가장 效率的인 方法을 採擇하는 것이다. 이機能은 곧 危險對處方法을 여럿을 講究한 후 각方法의 長短點을 檢討하고 아울러 이에 따르는 費用을 考慮하여 그中 가장 必要하고 最適의 方法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過程은

決코 容易한 것이 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 技術的이며 政策的인 要素를 감안하여야 한다. 例를 들어 어떤 特定한 危險에 對處함에 있어 危險을 第3者인 保險者에게 保險을 통하여 轉嫁시킬 것이냐 不然이면 自家保險이나 危險의 自己保有의 形式으로 自體에서 引受할 것이냐를 決定해야 할 것이며 萬一自家保險을 통하여 處理할 경우에는 超過保險(excess insurance)의 必要與否를 決定해야 할 것이고 그경우 自己保有限度를 必要性과 이에 따른 費用을 감안하여 策定하며 또한 그效率度를 測定해야 한다. 萬若 危險이 保險者에게 移轉될 경우에는 危險發生豫防에 대한 費用을 어느程度로 調節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한다.

이렇게 危險對策이 갖가지 代案中 몇 가지가 選定되었다고 해서 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危險發生豫防策을 講究할 경우 技術面에 置重할 것인가 또는 人間關係에 置重할 것인가 아니면 兩者를 모두 考慮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할 것이며 危險을 保險者에게 移轉할 경우 各種保險機關 即 株式會社, 相互會社, 保險交換組織, 共濟組織 등 가운데 어떤 機關을 選擇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決定되면 特定한 會社를 決定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定해지면 直接 保險機關과 相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 등 中間媒介機關을 利用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한다. 또한 保險料率算定方法中 어떤 方法을 採擇함이 企業에 有利할 것인가, 經驗料率算定方法(experience rating)의 採擇이 可能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算定方法의 어떤 方式이 가장 有利한가를 檢討해야 한다. 이밖에 實際問題處理에 있어서 危險管理責任者가 決定해야 할 問題는 許多히 많다.

危險管理者가 當面하는 企業內部問題 가운데 하나는 危險管理活動이 企業에 所得을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支出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危險管理者의 赫赫한 功績이 흔히 最高經營者の 눈에 띠지 않기 마련이다. 그의 能力이 評價될 경우란 大體로 그가 等閑視하거나 失手하였을 때 나타나기 마련이다. 即 危險發生의 根源을 發見치 못하여 그對策을 講究치 못했던가 保險機關을 잘못 選擇하였던가 하는 따위의 失手를 저지를 때 비로소 最高經營者の 注目을 끌게 마련이다. 따라서 危險管理者의 職務란 決코 容易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2 企業危險管理

企業이 實施하는 危險管理를 發達過程, 發達의 阻害要因, 危險管理部의 機構등 세 가지側面에서 簡略히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發達過程

危險에 直面하는 個人이나 企業은 한결같이 原則적으로 옛부터 그 處理方法으로 앞서 說明한 대로 危險의 發見, 分析, 評價 그리고 最適方法의 選定이란 過程을 거쳐왔고 또한 거쳐야 된다. 그러나 이런 危險管理의 機能을 企業에서 正式으로 特別한 部署를 두어 本

格的으로 制度化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라 하겠다. 即 美國의 경우 企業經營에 있어서 純粹危險取扱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그 處理에 대한 責任을 그企業內部에서 一元化 시켜야 되겠다는것을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것은 1920年後期와 1930年初期에 거쳐서 이다. 이렇게하여 數많은 企業들이 그들이 當面하는 危險을 處理하는 責任을 밟을 管理者를 任命하게 되었고 이들이 共同關心事를 論議하고 共同利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만든 첫 機關이 곧 美國의 Insurance Buyers of New York이며 이것은 1932年的 일이 다. 이機關이 發展하여 마침내 Risk Research Institute, Inc.로 그名稱을 變更하여 危險管理者들의 機關으로 確固한 位置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危險管理의 必要性和 重要성이 漸次로 普及됨에 따라 危險管理部나 保險部를 新設하는 企業이 늘어났고 이들은 既存機關인 Research Institute, Inc.에 加入하여 왔으나 1950年에 이르러 새로운 다른 機關을 만들었는데 이機關이 곧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Buyers이다. 危險管理가 發達함에 따라 企業經營에 있어 不可缺의 機能으로 認定되기에 이르렀으며 企業經營에 있어 危險管理의 位置가 次次 굳어짐에 따라 그機能도 高度化되고 多角化되며 이에 따라 이들의 機關인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Buyers도 그面貌를 바꾸어 그機構를 擴張하고 그이름을 1956年에 American Society of Insurance Management로 고쳤다. 이機關은 오늘 날 美國과 카나다에 35個支部를 갖고 있으며 그會員도 大企業의 大部分을 包含하는 3,000餘를 綱羅하게 되었고 이들企業에서 支出하는 財產保險과 賠償責任保險의 保險料만하여도 全國收入保險料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밖에도 이機關에 加入하지 않은 企業으로서 危險管理를 實施하고 있는 企業도 또한 적지 않다.

### 發達阻害要因

先進國에서 오늘날까지 이部門의 꾸준한 研究를 통하여 理論과 實際가 눈부신 發展을 거듭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長足의 發展을 이룩하는데 있어 몇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로 아직까지 企業內에 獨立된 部를 갖지 않은 企業이 있는데 그理由는 一種의 墮性때문이라 하겠다. 即 새로운 部門에 대한 革新的인 經營의 忌避와 회의에서 오는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새로운 危險管理部나 保險部같은 部署를 效率的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有能한人材가 不足하다. 現在 이 部門의 責任을 맡고 있는 管理者들은 大部分 保險以外의 他分野出身이며 이들이 어려운 開拓者の役割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은 大學에게 이危險管理部門에 대한 人材養成을 要請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時急한 課題가 되어 있다. 세째로 最高經營者의 이 部門에 대한 認識不足이다. 이들 最高經營者は 企業利潤의 極大化를 效率的인 危險引受를 통하여 이룩할수 있다는 事實을 妄却하기 쉬운 때문이며 이들에

계는 危險管理者란 管理者の機能이 納得이 가지 않기 마련이고 危險管理部나 保險部의 新設이 理解되지 않는다. 그들은 人爲危險은 勿論 純純危險까지도 包含한 危險引受行爲가 곧 그들의 機能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思考方式은 人爲危險과 純粹危險의 差別을 하지 못한데서 오는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危險管理部 組織

한마디로 말하여 危險管理部의 機能은 危險發生으로 因한 金錢的인 損害로부터 企業을 救해내는 것이며 企業의 資產이나 利益을 保存하는데 있기 때문에一般的으로 이부를 企業에서 財務業務를 擔當하는 最高經營者의 監督下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社長直屬일때도 있다. 危險管理責任者は一般的으로 assistant treasurer나 assistant controller의 幹部職名을 갖고 財務管理部門에 있으며 따라서 그는 全般的인 企業經營에 대한 狀況을 把握하기 容易한 地位에 있으므로 機會가 있을 때마다 財務擔當最高責任者로 任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美國에서 5大企業中 한企業은 財務部門의 新入社員을 全員 大學의 危險 및 保險學科出身으로 充員하였는바 이런 例만 보더라도 이部門의 位置가 漸次로 重要한 機能을 全企業經營面에서 發揮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危險管理部의 組織은 企業에 따라 다르나一般的으로 危險管理者(risk manager) 밑에 保險局과 損害豫防局을 두고 保險局(insurance division)에는 흔히 財產課(property section)와 從業員厚生福祉給與課(employee benefits section)을 둔다. 財產課에서는 火災, 賠償責任, 勞災 등의 여러 保險과 保證본드를 取扱하며 從業員厚生福祉給與課에서는 團體生命, 傷害 등의 保險과 企業年金制度를 管掌한다.

損害豫防局(loss prevention division)에는 大體로 火災豫防課(fire prevention section)과 產業安全課(industrial safety section)의 둘을 두며 前者에서는 財產에 대한 損害豫防業務를 擔當하고 後者는 產業災害豫防業務를 擔當한다.

많은 企業에서는 서로 이方面的 有能한 人材를 求하느라고 苦心하고 있는데一般的으로 從業員厚生福祉給與課責任者は 生命保險計理士인 경우가 많으며 財產課責任者は 災害保險計理士인 경우가 許多하다. 損害豫防局責任者에는 損害豫防技術者(loss prevention engineer)가 任命되거나 큰 財產保險會社幹部社員이 任命된다. 이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財產課에 損害補償管理責任者(claim supervisor)를 두기로 한다.

### 3. 家計危險管理

個人이나 家計에 있어서 經濟的 損失의 源泉은 企業의 경우와 怪似하다. 即 企業의 경우와 같이 個人이나 家計도 危險이 發生하면 資產이 줄고 負債가 늘며 收入이 減少되고 經

費支出이 增加하게 된다. 좀더 具體的으로 그例를 들면 個人이나 家計의 資產은 火災의 發生으로 家屋이나 家財가 燃失됨으로써 줄게 되고 現金이나 金銀寶石이 盜難當함으로써 줄어들게 되며 交通事故로 自己所有自動車가 破損當함으로써 줄게 된다. 負債의 增加로 因한 損害는 自動車運轉中 過失로 通行人을 치워 賠償責任을 물게 됨으로써 입게 되고 自己집 개가 이웃집 애를 물음으로써 賠償責任을 지게 되어 입게 된다. 一般的으로 個人이나 家計에 있어서 收入의 源泉이란 債給이나 紙料인바 이 收入의 源泉을 中斷當하거나 永久히 斷絕當하는 경우에는、두말할것 없이 收入의 減少를 招來한다. 그例로 家長의 非自發的 失業, 不意의 事故로 因한 永久不具나 一時臨時不具, 疾病, 精神疾患, 老令으로 因한 強制退職등을 들수 있다. 個人이나 家計에 대하여 經費支出의 增加를 가져오는 原因이란 入院費, 手術費, 藥代등을 包含한 醫療費를 그例로 들수 있다. 여기에 注目할 것은 一般的으로 「인프레」가 모든 個人과 家計의 經費를 增加시킨다는 點이다.

### 家計危險管理者

모든 個人은 그의 家計에서 自己自身이 當面하는 危險을 統制할 責任을 갖고 있으므로 各個人은 一種의 危險管理者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危險의 發見, 分析評價, 對策方法의 選擇 등의 機能을 企業의 경우처럼 家計에도 適用시킬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個人이나 家計는 이런 機能을 組織的으로 하지 않는다. 그理由는 첫째로 흔히 家計는 危險發生으로 因한 損害發生의 源泉을 發見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回避하는 傾向이 있으며 둘째로 그源泉을 發見하여도 이를 充分히 分析評價하려 하지 않고, 세째로 危險對備方法을 講究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 危險引受의 類型

모든 個人이나 家計는 自己가 當面하는 危險에 대해서는 自己가 一次的인 責任을 져야 함은 常識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原則은 個人이 찾는 自由에 대한 慾望과 權利에서 온다. 個人이 自己自身에 대한 決定의 自由가 있을 경우에는 이 自由의 行使로부터 입는 經濟損失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責任을 짊어져야 한다. 即 個人이 누리는 갖가지 自由 가운데 假令 職業選擇의 自由를 들수 있는바 自意로 한 職場에서 다른 職場으로 옮기는데 隨伴되는 經濟的 損害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責任을 져야 한다.

歷史的으로 볼때 人間文明이 시작할적부터 個人이 當面하는 危險에 대한 責任은 個人만이 짊어진 것은 決코 아니다. 이런 危險은 家族이란 制度에 의하여 分擔되었다. 家族의 一員이 疾病이나 不具로 因하여 穢動이 不可能하게 될 경우에는 家族이 이를 扶養하였으며 老令으로 因하여 穢動이 不可能해질 경우에는 亦是 家族이 이들을 扶養하였다. 自然現

象이나 外部人の 侵入으로 因한 財產破壞危險에 대하여서는 家族全員이 이에 臨하였고 不意의 突發事故로 因한 經費支出要因에 대하여서는 家族이 이를 負擔하였다. 이처럼 個人이 危險에 對處하는데 家族의 役割이 絶對的이었으며 一般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個人危險을 家族危險으로 看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近來에 이르러서는 東西를 莫論하고 家族制度가 이미 崩壞되었거나 不然이면 現在 이런 崩壞過程을 밟고 있다. 即 經濟單位로서의 家族制度는 農村經濟社會에서의 경우처럼 產業經濟社會에서 機能을喪失하기에 이르렀다. 過去에는 大規模家族이란 흔히 큰 資產이라고 하였지만 近來에 와서 特히 都市生活에서는 이것이 負擔이되고 있다. 家族에 있어서는 老令者의 役割도 過去 農村社會의 경우처럼 經濟的으로 重要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 都市社會에서는 그들의 役割이 極히 制限되어 있다. 또한 近代社會에서는 家族의 分化現象이 一般화되어 있으며 移住性이增加하여 집에 따라 3代乃至 4代 家族에서 2代家族으로 轉換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個人危險에 對處하는데 있어서의 家族機能은 漸次로 減少一路를 걷고 있다.

이런 現象이 나타남에 따라 危險에 대한 家族責任의 一部가 企業에 轉嫁되어 가고 있으며 그一例로 從業員厚生福祉給與制度의 發達을 들수있다. 近來에 이르러서는 老令退職者에 대한 生活費의 一部를 年金의 形式으로 終生托록 支給하고 있으며 疾病이나 負傷으로 因한 經費支出에 대해서는 從業員뿐만 아니라 그의 家族에게 까지도 醫療費를 支給하고 있고 臨時나 永久不具의 경우에는 有給病假나 不具所得給與의 形式으로 收入中斷으로 因한 經濟的損失을 補償하고 있으며 臨時失業을 위하여 一定俸給支給保障制度(guaranteed annual wage system)을 마련하고 있고 古參權을 認定하는 企業에 있어서는 高令者를 青壯年에 優先하여 失業으로부터 保護하여 收入中斷危險을 背免케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危險이 個人으로부터 企業으로 轉嫁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現象이 繼續될 것이다. 現在 美國에서는 自動車保險을 被用人保險의 一部에 包含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從業員信用組合의 發達등 雇用主의 役割이 漸次로 커질것이다.

家族과 雇用主와 더불어 國家도 또한 個人保障이나 家計保障의 責任의 一端을 肩어지고 있다. 過去의 國家機能은 國民의 生命이나 財產을 外敵의 侵入으로부터 保護하는데 있었지만 近代에 이르러서는 漸次 福祉國家의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다. 國家에서 個人危險의 發生에 대한 對備策으로 갖가지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들어보면 危險에 대한 研究開發活動, 建築法, 消防法등의 制定이나 消防警察등의 損害防止活動, 利子率統制, 公共投資事業, 市場統制, 消費者保護등이며 이밖에도 國家에서 直接 個人危險引受活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社會保障制度이며 이制度에서 取扱하는 危險은 老齡, 死

亡, 臨時乃至永久不具, 失業, 健康不良, 大規模家族等 實로多樣化되어 가고 있고 充實化되어 가고 있다.

#### IV. 保 險 計 劃

保險計劃이란 廣義의으로 危險管理의 重要한部門이다. 危險管理란 앞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合理的이고 效率的이며 科學的인 危險處理를 말한다. 危險을 處理함에 있어서는 이에 先行하여 危險의 發見이 必要하고 發見한 危險에 對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保險計劃이란 危險處理를 위한 各種保險의 選擇, 選擇된 保險相互間의 調整 그리고 選定된 保險과 保險以外의 다른 危險處理方法과의 調整등을 통하여 危險을 合理的이며 效率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科學的方法을 말한다. 先進國家의 예를 보면 個人的 경우 通常生命保險이나 團體生命保險을 各種社會保障給與와 調整하여 保險需要를 決定하기도 하고 保險을 各種損害發生豫防活動이나 危險의 自己引受方法과 아울러 檢討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先進國家의 경우를 中心으로 保險計劃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保險需要

保險計劃이란 根本的으로 企業과 家計가 當面한 危險을 處理하는 方法에 관한意思決定問題라고 보겠다. 企業이나 家計를 莫論하고 하나 하나의 경우가 個個의 企業이나 家計에 따라서 모두 相違하기 때문에 保險計劃도 이에 따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하나 하나의 경우가 모두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경우 가운데서 共通性을 發見할수는 있겠다. 企業의 경우에는 產業別 地域別 規模別, 活動範圍別등에 조차서 大體로 保險需要를 豫測할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家計의 경우에도 年齡別, 職業別, 地域別, 特殊事情別 即 死亡, 分娩, 老齡, 罹病, 火災, 自動車事故등등의 個人特殊事情別로 保險需要를 豫測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銘心해야 할것은 共通性이 있다고 해서 保險需要가 한集團을 形成하는 個個의 企業이나 家計에 對하여同一하다고 생각해서 안되며 앞서도 指摘한바와 같이 각各特異性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保險需要를 個個의 形便에 알맞도록 保險計劃을 樹立해야 하며 이에는相當히 高度의 技術이 必要하다. 따라서 個個의 企業이나 家計는 保險需要를 決定함에 있어서 正確하고 慎重한 危險調查(risk survey)가 必要하다. 이런 危險調查를 통하여 어떤 企業이나 家計가 當面하고 있는 危險을 發見해 내서 不幸히도 이런 危險이 發生함으로써 企業이나 家計에 미치는 影響을 測定하여 이에 適合한 保險措置를 財力의 能力範圍內에서 取하게 된다. 여기에서 格別히 조심해야 할것은 保險措置를 慎

重히 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即 保險을 통하여 處理할 危險을 充分히 잘 比較檢討해서 必要性이 많지 않은 保險을 위해서 巨額의 保險料를 支出하고 保險으로 對處하지 아니한 危險의 發生으로부터 막대한 打擊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혼히 볼수 있는 경우란 優重히 檢討하지 아니하고 樹立한 保險計劃에 의해서 充足된 保險需要가 費用이 더들고 完全치 못하며 充分치 못한 것이다.

現代科學文明이 發達함에 따라서 保險需要도 多樣化되고 深化되어 감에 따라 保險計劃의 樹立은 專門家의 힘을 빌림이 없이는 困難한 處地에 이르렀다. 또한 專門家가 되기 위해서는相當한 期間에 걸친 正規大學과 大學院의 教育과 實務經驗을 통하여 비로소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保險需要者가 그의 保險需要를 단순히 個人親分이나 社會的인 考慮에 의하여 充足시킬경우에는 必要한 危險處理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保險料負擔의 過重이나 或은 保險措置의 重複現象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實際로 그런例를 적지 않게 볼수 있다. 이처럼 危險의 多樣性이나 複雜性, 保險種類나 料率의 技術面이나 多樣性 등등을 감안할 때 保險專門家의 選擇은 의사, 辯護士 그리고 會計士의 경우와 같이 매우 優重하고도 合理的인 配慮가 必要하다.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保險計劃에 있어서 保險을 大體로 ① 生命保險과 健康保險 그리고 ② 財產保險과 賠償責任保險을 包含하는 그他保險으로 區分하는데 生命保險과 健康保險은 高度로 專門化되어 있기 때문에 大體로 이分野의 專門家는 이두 部門만은 專擔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 두 部門을 除外한 그他부문은 一般的으로 한사람이 모두 取扱한다. 特히 生命保險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細分하여 團體保險과 企業年金을 專門的으로 取扱하기도 한다. 財產保險과 災害保險부문에 있어서는 火災, 賠償責任, 勞動者災害賠償責任등의 各保險와 信用, 保證본드等 各種目을 專門的으로 取扱하기도 한다. 美國에서 最近에 나타난 現象은 所謂 all-lines agency 가 나타나서 保險의 全分野을 한 代理店이 모두 取扱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先進國에서는 一般的으로 企業이나 家計가 專門家인 保險代理人의 도움으로 自己의 形便에 알맞도록 保險計劃을 樹立하게 된다. 여기에서 特記할것은 企業의 경우 保險需要가 많고 危險管理와 保險處理를 專擔하는 專門部署를 두는것이 一般的이며 이部署를 危險管理部 또는 保險部라고 呼稱한다고 함은 既述한 바와 같다. 이 部의 專門家들은 大體로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과 接觸하여 保險措置를 取하게 된다.

이런 企業이란 大企業이기 마련이며 이같이 大規模의 企業에서 獨立된 危險管理部나 保險部가 必要한 重要한 理由는 첫째로 企業內部의 事情을 제아무리 能力있는 保險專門家라 할지라도 外部人으로서는 到底히 細部面에 이르기까지 企業經營의 內容을 把握할수 없을

것이며 可變的인 危險發生可能性을 繼續해서 觀察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고 이런 與件下에서 保險需要를 決定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둘째로 큰 企業에서는 保險料支出額이 高額에 達하므로 적은 比率의 保險料率引下라 할지라도 그 實額이 크며 不必要한 保險措置의 防止는 그企業에 커다란 費用節約을 가져오게 되고 必要한 損害豫防이나 損害輕減施設을 위한 投資는相當한 額數의 保險料支出減少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또한 企業의 效率的인 危險管理는 必要한 保險措置의 疏忽로 因한 莫大한 被害發生의 可能性을 除去하게 된다. 이와 같은 理由로 最近企業經營에 있어서는 危險管理가 漸次的으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專門知識을 갖춘 保險購買者가 얼마나 企業에 金錢上의 도움을 줄수있는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2. 保險市場

保險需要를 決定하기에 앞서 危險處理方法을 優重히 科學的으로 檢討해야 하고 이檢討가 끝나면 保險需要에 따라 保險市場의 現況을 考慮하여 適合한 保險者를 選擇해야 할것이며 이에는 能力있는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の 選擇이 必要하다.

保險機關에 非營利機關과 营利機關의 둘이있는데 前者は 自家保險, 相互會社, 相互保險交換組織 그리고 共濟機關등을 말함이요 後者は 株式會社와 ロ이즈(Lloyd's)를 말한다.

保險機關의 選定에는 다음과 같은 基準을 생각할수 있다. 첫째로 財務面의 健全性을 考慮해야 한다. 이에는 保險機關의 規模, 資本金과 剩餘金을 合친 保險契約者剩餘金의 規模, 3年 내지 5年間의 經費率과 損失率, 有能한 保險專門家의 有無, 外國市場과의 紐帶等 을 考慮해야 한다.

保險機關의 財務能力을 檢討함에 있어서는 財務諸表를 分析해야 하는데 이에는 技術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保險會計는 一般企業會計와 많은 特異點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顧客에 對한 서비스를 考慮해야 한다. 서비스는 保險代理人을 通하여 向上될수 있으며 保險機關의 販賣조직의 效率性提高를 通해서 可能하다. 保險金을 신속히 支給하느냐를 多角度로 調査해야하고 保險金査定에 있어 지나치게 技術의 아닌지를 調査하며 아울러 效果의 損害防止對策을 마련해주는지를 檢討해야 한다.

세째로 保險의 種類를 생각해야 한다. 保險機關의 主要戰略商品이 무엇인지를 調査하여 보고 保險種類別로 能力있는 保險機關을 選擇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保險機關은 取扱保險種目에 特色이 있기 마련이며 그特色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네째로 保險料率을 檢討해야 한다. 그러나 保險商品에 對한 價格比較는 매우 困難한데 그理由는 保險契約의 內容이 다르기 때문이다. 價格에 너무 지나치게 神經을 쓰면 必要한 保險의 惠擇을 제대로 받

지 못할 憂慮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保險專門家로서의 危險管理者가 必要하며 危險專門家가 없을 경우에는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の 介入이 必要하다. 大體로 保險料率檢討에 있어서는 保險機關의 3~5年間의 損失率과 經費率의 分析이 必要하다.

여기서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の 選擇基準을 살펴보면 첫째로 保險知識과 能力を考慮해야 한다. 即 어느 程度의 保險敎育을 받았으며 어느 程度의 經驗이 있는가를 編密히 檢討해야 한다. 이것은 곧 保險專門家의 能力を 말한다. 이들의 機能이란 企業이나 家計가 當面하고 있는 危險이 무엇인가를 保險購買者에게 納得시켜야 한다. 이들은 이들의 機能을 다하기 위해서 國內市場의 動向등은 물론 國際市場의 움직임 까지도 소상히 把握하고 있어야 하고 外國市場과의 유대를 恒常 保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의 顧客인 保險需要者의 形便에 알맞는 保險種類, 保險契約 그리고 保險料率 등을 提示할 수 있게된다. 둘째로 積極性을 考慮해야 한다. 제아무리 能力이 있다고 할지라도 積極的인 顧客에 對한 서비스를 제울리 할경우에는 能力은 없으나 热誠있는 경우 보다 나을것 없다. 따라서 積極性이 있어야 하고 그 積極性을 가장 充實히 發揮하여 顧客이 當面한 危險을 調査하고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통해서 保險計劃을樹立해야 한다. 또한 必要한 경우에는 本然의 任務에 添加해서 法律 會計 그리고 그밖에 分野에 거쳐서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고 損害豫防이나 輕減措置 그리고 損害發生時의 保險金請求 등 여러 分野에 있어서도 積極的으로 便宜을 提供해 주어야 한다.

세째로 性品과 信用을 考慮해야 한다. 아무리 能力이 있고 積極性이 있다고해도 性品이 좋지 못하고 정직치 못하다고 하면 保險需要者로서는 充分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볼수 없다. 흔히 效率的으로 保險需要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顧客으로부터 極秘에 해당하는 情報나 資料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絶對的인 信用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의사, 辯護士 그리고 會計士의 경우와 같다.

네째로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이 代表하고 關係하는 保險會社를 考慮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一流級의 사람들은 自然히 一級의 保險會社와 結付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顧客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關係하는 保險會社나 機關을 嚴選할 것이다. 때로는 새로운 保險需要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경우 이에 適合한 새로운 保險이 必要하게 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이런 保險需要를 充足시킬수 있는 保險會社이어야 하며 必要한 保險을 比較的 염가로 提供할수 있어야 한다.

### 3. 企業保險計劃

企業保險計劃의 原理는 家計의 경우와 같으며 이를 企業生命保險과 企業財產 災害保險

의 둘로 区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A. 企業生命保險

企業生命保險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먼저 目標設定부터 해야 하는데 그目標를 繼續企業에 둘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企業人이 死亡한 뒤에 오는 企業危機를 防止하는데 둘것이냐를 決定해야 한다. 後者の 경우란 同業者나 大株主나 核心幹部의 死亡으로 말미암아 企業支配를 喪失하게 되거나 企業을 解散하게 되거나 不然이면 企業의 價值를 低下시키게 됨을 防止한다. 이런경우 細密한 生命保險計劃을 통해서 企業의 解散을 未然에 防止할수 있고 企業의 支配를 繼續할수 있으며 企業價值의 低下를 防止할 수 있다.

##### i. 賣買契約

同業이건 大株主이건 核心幹部社員이건 間에 死亡한 사람의 利益을 그대로 維持하고 生存한 사람의 利益도 아울러 繼續하게 하기 위해서는一般的으로 企業生命保險을 통하여 賣買契約(buy-and-sell agreement)를 締結한다. 이렇게 하여 企業存廢의 危險을 背免하게 된다. 이 賣買契約은 事前에 關係者들이 死亡이란 不幸이 닥쳐올 경우에 對備하여 賣買金額에 대한 合意를 보아두고 이를 生命保險으로 代置하게 된다. 이契約에는 關係人の 이름과 契約의 目的이 상세히 規定되고 아울러 賣買金額이나 賣買金額決定公式이 記錄된다. 모든 關係人們은 어느 누구라도 死亡할 경우에 死亡人の 利權을 미리 合意본 金額이나 公式에 의하여 사고 팔것을 規定하며 이目的에 使用하는 生命保險購買에 所要되는 保險料支出方法을 合意보고 必要에 따라서 保險金額의 變動을 可能케 하도록 規定한다. 그밖에 企業負債, 解約權利, 契約內容修正등에 關한 細部에 關한 事項에 合意를 본다.

이렇게 해서 締結된 賣買契約은 關係人の 死亡으로 因한 企業의 危機를 背免케하고 死亡人이나 生存人 모두 事前に 公正한 自己所有利權의 賣買價格을 알수 있으며 紛糾를 미리 豫防할수 있다. 이런것은 生命保險을 통해서 비로소 可能하게 된다.

##### ii. Key-man 生命保險

企業經營에 없으면 안될 核心幹部의 價值은 絶對的인 것이며 그의 死亡으로부터 오는 企業에 對한 打擊을 考慮하여 마련한 것이 곧 key-man 生命保險이며 이 保險을 통해서 key-man의 死亡으로 因한 企業의 經濟損失을 補償케 하고 또한 이 保險으로 그에 代身할 수 있는 人物의 採用을 可能케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key-man이란 會社에서 中樞의인 役割을 하는 重役과 그밖에 幹部社員을 말한다. 이들이 死亡時에는 生命保險金을 企業앞으로 支給토록 한다. 이 key-man에 대해서도 그의 遺家族에게 그의 生存時의 紙料를 繼續 支給토록 한다.

<■ 1> 危険保険에 隨伴되는 危険點検表

Exposure Chart

Business Property

Damage Owned	Destruction of Property	Third-Party Liability	Crime and Dishonesty Losses	Indirect Losses
-----------------	-------------------------	-----------------------	-----------------------------	-----------------

Fire	Motor vehicles	Money	Loss of use of buildings	
Extended coverage perils	Premises	Securities	Extra Expenses for temporary facilities	
Windstorm	Elevators	Dishonest employees	Loss of income from rental property	
Hail	Construction	Trustees and fiduciaries	Loss of tuition fees	
Explosion	Alterations	Foxygeny	Rainfall in connection with entertainments	
Smoke	Demolition	Robbery	Loss due to destruction of records	
Riot and civil commotion	Hold-Harmless Agreements	Burglary	Loss due to failure of off-premises power supply due to an insurable peril	
Boilex explosion	Sports-contests	Mysterious disappearance	Boiler and machinery breakdown	
Van 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Entertainments	Wrongful conversion		
Removal of debris	Aircrafts	Dishonesty of agents		
Automobiles	Watercrafts			
Aircraft	Automobiles			
Water craft	Subrogation claims			
Glass	Boiler Liability			
Fine arts	Aueged libel			
Earthquake	Ballee's liability			
Sprinkler leakage	Workmen's			
Water damage				
Floods				

Note: Underline in red the essential coverages; in blue, the coverages recommended but not essential.

이런 保険은 有能한 人材를 誘致할 수 있으며 따라서 企業能率을 向上시키는데로 活用 한다.

### B. 企業財產災害保險

家計保險計劃의 경우도 그렇지만 企業은 人的 危險以外에 物的危險이나 法的賠償責任保險의 計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危險調查가 先行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危險을 發見하고 分析하여 危險의 發生이 企業經營에 미치는 影響을 測定하여 保險措置를 取하게 된다. 이경우 必要한 保險의 種類와 金額을 決定하게 되고 아울러 企業이 自己引受할 危險의 種類와 引受限度를 策定하고 旣히 附保한 危險일지라도 企業이 吸收한 損害의 額數를 檢討하고 나아가서 危險豫防措置까지도 아울러 講究하게 된다.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危險調查를 위해서 危險調查表가 作成되는데 이表는 大企業에서는 危險管理者가 作成하고 中小企業에서는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인이 作成한다. 이表가 準備되면 分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分析은 財務分析과 아울러서 進行되어야 하고 各種保險契約에 規定된 除外規定이나 例外規定의 綜合的 檢討도 이루어져야 한다.

企業에서 危險調查를 끝마치면 곧 附保措置를 取해야 하는데 이때 保險加入交渉으로 因하여 附保措置가 遲延되어서는 안된다. 危險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保險措置를 위한 期間이 길게 마련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假保險契約(binder)을 締結하여 無保險의 ギャップ(gap)을 메꾸어놓아야 한다. 이 假契約은 文書化해야 할것이며 그形式은 書翰이건 電報이건 아무것이나 無放하다. 且 假契約이 締結되면 이 契約은 保險契約內容, 保險料率, 保險期間, 保險料支拂方法등에 關해서 保險者와 完全 合意를 보고 正式 保險證券이 發給될때 까지 有效하고 正式保險契約과 同一하게 遷及해서 그效力를 發生하게 되는것이 一般的이다. 萬一合意가 保險契約當事者間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保險者は 即時 附保拒否通知를 保險契約者에게 해야 한다.

### C. 事例

企業保險計劃의 事例로서 錦山企業社가 推進中에 있는 shopping center의 경우를 들기로 한다.

#### 〈事例〉

方甲童이는 서울近郊에다 새로운 쇼핑 센터를 建立하려고 計劃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錦山企業社라는 法人體를 組織하였다. 尚今 建設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그는 이事業着手에 앞서서 建設期間中과 建設完了에 隨伴되는 危險管理에 關한 諮問을 要請해 왔다.

佔地는 88,000坪이 所要될 것이나 아직 買入이 되지 않았고 建設會社는 指定되어 契約이

끝나서 設計를 進行中에 있다.

이 솔핑 센타에 들어서게 될 企業體는 大體로 選定이 되었고 이들은 大規模의 슈우피·마아겔, 百貨店分店, 有名한 레스터랑, 劇場, 雜貨商, 理髮館, 洗濯所, 銀行支店, 保險會社代理店 等이다. 이들은 모두 24業體이며 이들은 同一하게 15年間 賃貸契約을 締結할 豫定이며 이契約에 依하면 固定月貢와 賣上高에 따른 可變賃貸料를 支拂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火災가 發生하여 營業이 不可能하게 될 경우에는 賃貸料를 支拂치 않아도 無放하도록 規定하였다.

여기에서 들어설 建築物은 모두 耐火性 賽材를 썼으며 煙房施設은 主建物뒤에 마련하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全施設에 熱을 供給하게 되어 있다.

駐車施設은 400台規模로 할것이며 여기에는 夜間駐車施設을 갖추게 될것이다. 각建物에는 倉庫施設을 極少로 할것이며 各賃借人은 自己責任下에 除雪作業, 쓰레기除去, 火災損害의 復舊, 冷房施設, 消火施設等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적은 管理事務所가 建物內에 들어있을 것이며 管理要員은 10人으로 할 것이다.

#### 〈事例研究의 要點〉

1. 方甲童이는 現在 이時點에서 어떤 危險에 當面하고 있는가? 이 危險은 人爲危險인가 不然이면 純粹危險인가? 그가 危險에 對備하기 위해서 어떤 保險을 생각할수 있는가?

2. 建設工事進行中 그는 어떤 危險에 直面하게 될것인가? 이危險을 위해서 어떤 保險을 생각할 수 있는가?

3. 建設工事が 끝난뒤 그에게는 어떤 危險이 隨伴되게 마련인가? 그建物의 位置만을 생각할때 어떤 危險을 생각할수 있는가? 여기에 人的 危險이 있는가?

4. 이 錦山企業社가 當面하는 危險을 위해서 危險管理者로서 危險調查를 實施하여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考慮해야 한다.

a. 方甲童 社長이 避할수 있는 危險은 무엇인가? 그例를 들어서 說明하라.

b. 方社長이 等閑視할 수 있는 危險은 무엇인가? 그例를 들어서 說明하라.

c. 方社長이 自己引受할 危險과 豫防할 수 있는 危險은 무엇인가? 例擧하라.

d. 方社長이 自家保險할 危險은 무엇인가?

e. 社會保險을 包含하여 方社長에게 권고할 保險計劃을 세워라.

여기에는 必要不可缺의 保險,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保險 그리고 考慮할 수 있는 모든 保險으로 區分하라.

5. 「솔핑·센타」建設이 完了되고 賃借人們이 모두 入住하였다고 假定할경우 다음과 같

은 入住者가 當面하는 危險과 保險計劃을 說明하라.

- a. 百貨店分店
- b. 슈퍼 마아첼
- c. 레스토랑
- d. 銀行支店
- e. 洗濯所
- f. 保險代理店

#### 4. 家計保險計劃

保險需要의 充足은 保險購買를 通하여 可能하며 保險購買는 合理的인 保險計劃을 通하여 效率化할수 있다. 그러므로 흔히 保險計劃은 保險購買에 앞서거나 保險購買와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 先進國의 例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保險計劃이란 큰 危險管理의 局面을 말한다.

生命保險이나 健康保險分野에 있어서는 保險計劃(insurance planning)을 保險프로그램(insurance programing)이라고 부르고 그 他保險分野에서는 危險調查(risk survey)나 保險調查(insurance survey)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個人과 그의 家族을 위한 保險計劃을 살펴보기로 한다.

##### A. 個人生活設計

個人生活設計(personal life estate programing)은 어떤 時點을 基準으로 個人이나 그의 家族을 對象으로 實際財產과 潛在財產을 包含한 家族財產과 所得을 調査하고 장래의 家族財產에 對한 必要性을 細密히 科學的으로 檢討함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家計의 現在財產狀態와 장래 資金需要를 檢討하고 둘째는 이런 장래 資金需要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生命保險需要를 決定하고 이 生命保險需要를 最低費用으로 充足시켜야 한다.

先進國家에서는 이 制度가 最初로 마련되었을때 社會에서는一般的으로 이 制度란 高所得層을 위한 것이며 이 階層에서 遺產에 對한 處理, 納稅, 財產分配를 위한 財產處分등 여러 問題를 解決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近來에 이르러 中流階級 特히 債給生活者에게 必要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물샐틈없이 짜인 家計를 土臺로 장래를 計劃하고 이를 生命保險을 通하여 對備하는 傾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潛在財產中 重要한 것은 生命保險이다. 왜냐하면 家族扶養責任이 무거운 家長이 別로 財產을 마련치 못하고 死亡하거나 永久不具가 될경우에는 그 家計는 破產이나 다름없는 狀態에 處하게 되나 生命保險으로 이를 對備할 경우에는 그 即時 家族財產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1) 生命保險計劃

綜合生活設計의 첫째로 生命保險計劃(life insurance planning)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를 保險需要와 需要測定方法의 둘로 區分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 保險需要

生活設計의 첫段階은 保險需要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은 保險需要者와 몇 차례에 걸친 會合끝에 個人이나 全家族의 保險需要를 测定하게 되는바 이 경우 그需要를 重要度의 順位로 提示한다. 이 保險需要測定에 있어서 衣食住中 基本的인 最低需要부터 시작하여 차츰 最低生活線以上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衣食住와 같은 最低需要以外의 것을 追加한다. 여기에서 最低需要라 함은 ① 清算基金(cleanup fund), ② 再調整所得(readjustment income), ③ 扶養期養育費(income during dependency period), ④ 未亡人終生生活費(life income for widow), 그리고 ⑤ 抵當家屋代金賦金을 들수 있는바 그內容을 簡單히 요약하면 ① 清算基金이란 稼動力이 있는 家長이 死亡하기 前에 所要되는 醫療費, 진찰費, 個人負債, 遺產管理에 所要되는 各種費用, 그리고 相續稅等 諸稅를 말한다. ② 再調整所得이란 家長生存時의 生活水準을 그가 死亡한 뒤에도 1~2年 繼續하여 精神衝擊에 겪치게 마련인 經濟打擊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生活費를 말하며 ③ 扶養期養育費란 再調整期가 끝난뒤 未亡人이 職場을 가짐이 없이 子女의 養育을 위해 全的으로 家族을 돌볼수 있고 마지막子女가 18歲에 이르기까지 生活할수 있는 生活費를 말한다. ④ 未亡人終生生活費란 成年이된 子女를 모두 獨立시킨뒤 흘로남은 未亡人이 終生 生活할수 있는 生活費를 말한다. ⑤ 抵當家屋代金賦金이란 家屋을 살때 家屋을 擔保로 融資받고 그代金을 長期間에 걸쳐 支拂하게 되어 있을 경우 定期的으로 支拂하는 그月賦金을 말한다.

이와 같은 最低需要외에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需要를 더 追加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① 教育費(educational fund), ② 退職基金(retirement income), 그리고 ③ 特殊基金(special fund)을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教育費란 主로 大學이나 大學院을 말하며 退職基金이란 家長이 停年退職한 뒤에 必要한 生活費를 말하고 特殊基金이란 非常用途를 위한 基金, 子息에게 事業미천을 대어 줄 目的의 基金, 女息의 結婚基金, 子女에 대한 終生生活基金, 慈善團體에 대한 寄附金 等을 말한다.

#### 保險需要測定方法

保險需要를 测定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必要한 資料를 菁集하고 둘째로 菁集한 資料를 保險需要者的 目的에 알맞게 分析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必要한 資料란 ① 財產에

關聯性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家長과의 關係, ② 保險受益者的 다른 經路를 통한 資產과 相續財產, ③ 夫婦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는 財產, ④ 生命保險, ⑤ 家長이나 그밖에 關係者の 事業에 關한 各種資料와 將來計劃, ⑥ 負債의 性格과 金額 等이며 生活設計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生活設計對象者の 個人이나 事業에 關한 財產事項을 完全히 把握해야 한다. 이런 資料를 菁集하는데 있어서 生活設計擔當者は 特히 對象者인 家長의 健康狀態, 年齡, 性別 等을 為始하여 扶養家族等의 數, 年齡, 性別, 家長의 個人財產, 納稅義務, 現在收入, 配偶者의 收入, 現在갖고 있는 保險등을 자세히 調査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갖가지 保險을 각각 다른 日字에 購買하는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各種保險의 特徵을 充分히 考慮하여 綜合化乃至 統合을 期해야 한다. 特히 여터 社會保障給與와 職場에서 마련하는 團體保險이나 企業年金을 調査해야 한다. 그리고 生命保險契約擔保貸付를 받은일이 있는지의 輿否, 家長이 退役軍人인 경우에는 軍人保險給與의 有無等을 調査해야 한다. 이런 資料를 全部菁集하고 난뒤 家長이 돌연히 現時點에서 不幸히도 死亡할 경우 最低限度로 所要되는 生活費나 그밖에 資金需要는 어떻게 되는가를 調査하기 위하여 資料를 綜合하고 分析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綜合的인 資金需要가 決定되면 그資金의 用途別所要時期를 調査해야 한다. 大體로 이런경우에 使用하는 科學的인 樣式이 準備되어 있어 이樣式에 記入하여 把握하게 된다. 特히 菁集된 資料를 이樣式에 記入하여 綜合할때 主로 所要資金이妥當性이 있으며 現在財力으로 可能한지의 輿否를 가려내고 追加保險需要를 調査하여 保險을 通한 資產의 分配를 어떻게 合理化 시키느냐를 把握해야 한다. 이같이 하여 過度한 資金需要는 財力이 허용하는 限度로 抑制하고 過小하게 策定된 資金需要는 이를 增大시켜서 調節해야 된다.

只今까지는 生命保險을 中心으로 살펴보았지만 生命保險以外의 資產이 있으면 그額數와 이 資產으로부터 얻을수있는 月別所得을 調査하여 生活設計에 包含시켜야 한다. 만약 現在 쌓아놓은 財產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必要한 財產을 마련할수있다는 保證이 없으므로 가장 손쉽게 使用할수 있는 財產確保方法이란 곧 生命保險이며 이런理由로 生活設計에는 生命保險이 基礎가 된다. 이生命保險의 基礎위에 投資收益이나 그밖의 收入을追加하게된다.

生命保險의 設計에는 特別한 技術이 必要하며 이設計를 科學化하여 保險金支給能力을 最大화할경우에는 그 支給能力을 50%나 增加시킬수 있다. 이것은 資金需要를 所要時期別로 그支給을 分割함으로써 可能하다. 또한 生命保險은 一般的으로 死亡時に 對備하는 特性뿐만 아니라 老令期의 生存時까지도 對備할수 있는 兩面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后者의

경우를 위하여 停年退職年令에 支給받을 保險金과 社會保障給與, 企業年金 그리고 그밖에 收入을 考慮에 넣고 生活設計를 꾸며야한다. 그밖에 收入이란 貯蓄, 遺產, 軍人年金등을 말한다.

## 2) 健康保險計劃

健康保險計劃(health insurance planning)은 前述한 生命保險計劃의 경우 使用하는 方法과同一하다. 近來에 와서 保險契約者와 그의 家族을 人的 危險으로부터 長期에 거쳐서 保護하기 위해서는 健康保險을 生命保險과 같이 考慮하여 이두保險을 統合시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事實 適切한 健康保險措置없이는 제아무리 生活設計를 生命保險만을 爲主로 만든다하더라도 그 目的을 圓滑히 達成할수 없다. 왜냐하면 重傷이나 重病의 경우에는 生命保險計劃을 通過서 마련한 生活設計가 余地없이 문어지게되기 때문이다. 重傷이나 重病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로 追加經費를 支出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貯蓄의 流出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臥病期間中에는 穢動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收入中斷이란 現象을 招來하게 되며 이런 現象은 現在 存續하고 있는 갖가지 生命保險을 解約해야 되는 形便에 處하게 된다.

健康保險은 一般的으로 그 優先順位를 ① 入院費, ② 手術費, ③ 手術을 必要로 하지 않는 治療를 위한 費用, ④ 放射線費用과 이에 準하는 費用, ⑤ 醫師尋訪治療나 通院治療費用으로 한다. 그러므로 保險料支拂能力이 制限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順序를 原則으로 하되 保險契約者の 形便과 그의 希望에 따라서 그種類를 制限한다. 이밖에 主要醫療保險(major medical insurance)이 最近에 이르러 相當히 그需要度가 높아 졌는데 그 理由는 上述한 種類의 의료費는 比較的 그리 크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 豫想外로 莫大한 金額의 經費가 支出되어 家計를 破算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保險은 費用의 種類를 不問하고 의료費가 事前에 策定한 限度를 超過할때 그超過額에서 一定한 金額을 支給해주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數百弗의 의료費를 負擔할수 있는 財力이 있는 사람은 入院保險, 手術保險, 의료保險등 보다는 主要醫療保險을 사서 數千弗의 過度한 支出에 對備한다.

生活設計에 있어서 生命保險과 健康保險을 統合시켜야 하는 理由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로 死亡前治療費의 重複을 생각할수 있다. 萬若 이費用이 健康保險 特히 主要醫療保險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에는 生命保險計劃에서 이를 考慮함은 分明히 不必要한 保險을 위한 保險料支出이 될것이다. 둘째로 負傷이나 疾病으로 因한 收入斷絕의 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生命保險에 있어서는 이경우 收入斷絕問題는 어느程度 保險料支拂免除條件과 不具所得(不稼動으로 因하여 中斷된 所得)에 對한 補償 特約으로 緩和할수 있다. 그러나 예

기에서 注意할 것은一般的으로 이런 條項의 插入이나 特約添加는 保險契約者の 要請에 의해서 可能하다는 것이다. 大體로 生命保險을 通해서는 完全永久不具(一般的으로 6個月을 超過하여 稼動이 不可能한 경우)의 경우만을 對備할수 있으며 不完全 臨時不具(6個月以內에 恢復可能하고 part-time 으로 일 할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그 對備가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健康保險을 通한 이런 危險에 대한 處理가 必要하게 된다. 健康保險에 있어서는 不具所得補償은 平常時 所得의 50~75%로 制限하게 되는데 比하여 生命保險에 있어서는 契約高에 準하여 그補償額이 決定된다. 따라서 生命保險과 健康의 統合이 切實히 要望된다.

健康保險은 社會保障給與와 關聯시켜 그 需要를 決定해야 한다. 美國에서는一般的으로 社會保障制度를 通하여 完全不具給與만이 支給되며 그 額數도 最低貧困線을 考慮한 것이기 때문에 家族의 形便에 따라 健康保險을 通하여 醫療費와 所得補償對策을 講究해야 한다.

### 3) 家計 및 自動車保險計劃

家計保險이란 住宅과 그附屬建物 그리고 家財등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은 人體致傷이나 死亡 그리고 財產損害로 因한 第3者賠償責任保險과 衝突保險 그리고 盜難, 醫療費補償등을 모두 包含한다.

家計에서 所有, 保管, 管理, 使用하는 財產이나 自動車에 對한 保險을 어떻게 計劃할 것인가 하는 것은 生命保險이나 健康保險의 경우에 比하여 容易하다.

왜냐하면 附保金額이 곧 그財產의 價格이기 때문이며 그價格은 市場價格에 의해서 決定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部門에서 保險計劃이 必要한 것은 家計나 自動車의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保險限度를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問題는 住宅의 位置나 自動車運行區域의 危險度나 事故發生頻度에 의해서 決定될 性質의 것이다. 即 都市나 그近效地方에 있어서는 높은 限度를 設定해야 할것이며 自動車保險의 醫療費補償金額을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健康保險의 補償範圍와 限度를 考慮해야 한다. 住宅等 財產保險에 있어서는 그 財產의 價格을 檢討해서 中位以上의 경우에는 廣範圍한 危險을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해야 할것이다. 家計保險이나 自動車保險에 있어서는 控除額(deductibles)을 設定하게 되는데 이 金額策定에는 家計의 經濟能力과 그밖의 保險需要를 考慮하여 決定해야 한다.

### 4) 事例

美國의 4人家族의 경우를 놓고 家計保險計劃을 樹立하여 보기로 한다.

- ① 年令: 家長 28才 妻 25才 쌍등이 3才
- ② 收入: 年俸 \$7,200 또는 月俸 \$600
- ③) 所有財產

家屋	市價 \$25,000	20年拂貸金	\$18,000
自動車	市價 \$2,000		
銀行貯金	\$500		
株式投資	\$1,000		

위의 사례에 대한 보험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生命保険<sup>(8)</sup>

a) 保険需要

a1) 死亡前諸経費(治療費, 診察費, 稅金等)	\$ 5,000
a2) 家屋抵當貸早返償還	18,000
a3) 教育費(1人當 \$ 5,000)	10,000
a4) 再調整所得(年間 \$7,200씩 2年間)	14,400
a5) 扶養期養育費(年 \$6,000씩 애들이 18才에 이르기까지 13년간)	78,000
a6) 未亡人 62歳까지의 生活費(年 \$2,400씩 62歳에 이르기까지 40歳부터 22年間)	52,800
a7) 未亡人 62歳부터 終生生活費(年 \$2,400씩 終生, 豫定年 18年)	43,200
總 需 要	\$ 221,400

b) 保険措置

b1) 社會保障給與 O.A.S.D.I.

死亡給與	\$ 255
遺家族給與(月 \$ 254씩 15年間)	45,720
未亡人給與(62歳以後) (月 \$104.80씩, 豫定年 18年)	22,627
計	\$ 68,600

b2) 團體生命保険(年俸의 1.5倍) \$ 10,800

b3) 保険需要 \$221,400 - \$79,400 = \$142,000

b4) 保険需要의 現在價值 (社會保障給與, 團體生命保険을 控除한

것으로 未亡인이 25歳부터 15年間의 保険需要는 \$70,000원 바

이를 .85와 2.5%로서 現價를 計上하면) 59.50

b5) 未亡人에 대한 40歳와 62歳사이의 保険需要는 \$52,800원 바

이를 .53과 2.5%로서 現價를 구하면 28,000

(8) <圖 2>를 參照.

b6) 未亡人에 대한 62세 이후의 保険需要는 社會保障給與를 控除

하여 \$21,000인 바 이를 .32와 2.5%로서 現價를 求하면 ..... \$ 7,000  
 計 \$ 94,500

b7) \$ 94,500의 生命保險은

bi) 15년定期保険으로 領면이 \$43,000인 경우 그費用은 .....	\$ 258.00
bii) 未亡人 40~62歳間終身生命保険 \$35,000.....	70.00
biii) 未亡人62歳 終身生命保険 \$21,000.....	336.00
年間費用 計	\$ 664.00

## ② 健康保險

a) 入院保険과 手術保險(全家族을 위한 것으로 入院은 日當 \$20로

120日동안 이며 手術保險은 \$300 schedule로 하여) ..... \$ 100.00

b) 主要醫療保險(全家族을 대상으로 最高 \$15,000 .....\$500의

控除額이며 80%의 共同保險條件으로) ..... 50.00

c) 不具所得保險(月 \$300을 疾病인 경우 2年間 支給하고 그以後

는 月 \$ 150 支給하여 解約不能契約으로) ..... 100.00

### ③ 家計保險

住	宅	\$ 22,000
車	庫	2,200
家	財	8,800
追 加 生 活 費		4,400
個人 賠償責任 程度		25,000

#### ④ 自動車保險

a) 賠償責任保險

ai) 人體致傷——最少限度 1人當 \$25,000 1事故當 \$50,000

a ii) 財產損害——最少限度 1事故發生當 \$10,000

b) 醫療費 1人當

c) 包括財產損害——自動車市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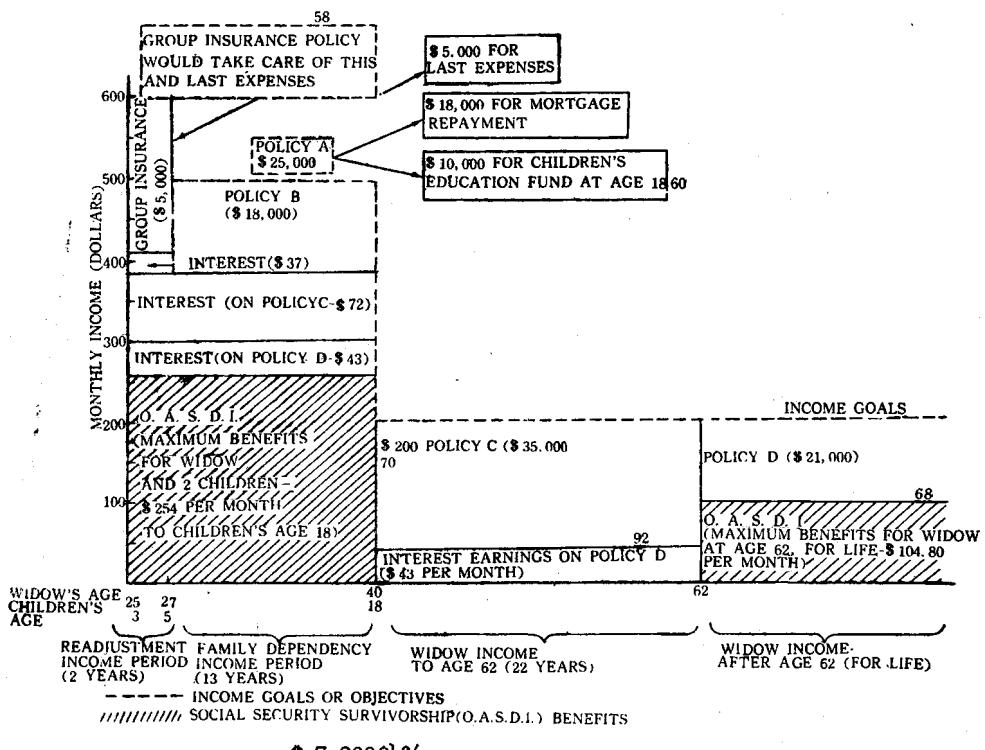
d) 衝突——自動車市價 \$100 控除額

e) 無保險운전자附保持約

年間費用 計			\$150.00
⑤ 年間保険料總計			%
a) 生命保険	\$ 664.00	59	
b) 健康保険	250.00	22	
c) 家計保険	60.00	6	
d) 自動車保険	150.00	13	
總計	\$1,124,000	100%	

여기에서考慮해야 할것은 家計에서 차지하는 保険料支出의 比重인데 이事例에서 例를 든【家族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家計의構成을 생각할 수 있다.

〈圖 2〉 個人生命保険計劃과 社會保障給與의 統合



2) 食 科 品	20
3) 衣 類, 娛 樂 費, 雜 費	15
4) 保 險	15
5) 自動車와 交 通 費	10
6) 稅 金	10
7) 賯 蕩	5
	100

只今까지 考察한 例는 美國에서 볼수있는 普遍的인 경우이며 實際로 各家計의 形便에 따라 그內容이 얼마인지 달라 질수 있다. 即 그地方의 保險市場, 건축, 住宅의 位置, 家長의 職業, 保險契約의 種類, 운전경력, 財力, 家族數, 家族年令, 家族의 健康狀態, 賯蓄의 多樣性과 그額數 등등 數많은 要素에 의해서 달라 질수있다. 그리고 保險需要는 危險이 變化함에 따라 變動되는 것이므로 恒時 그 變動을 把握해야 하며 變動이 클 경우에는 保險計劃도 修正해야 한다. 保險의 變化뿐만 아니라 保險料支拂能力의 變化도 아울러 考慮하여 保險計劃에 伸縮性을 期해야 한다.

## V. 結 論

只今까지 先進國에서 널리 研究하고 있는 危險管理의 一般理論을 實際와 아울러 考察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企業을 보면 危險管理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美國經營者가 直接經營에 參與하고 있는 몇몇 企業을 除外하고는 찾아볼수 없다.勿論 保險市場의 極端的인 後進性과 保險行政의 前近代性에서도 그 原因을 찾아볼수 있겠지만 이보다도 根本的으로 企業自體의 問題가 더 크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速히 企業이나 學界에서 危險管理에 關한 새로운 研究가 시작되어 다른 分野의 아울러 企業合理化를 圖謀해야 되리라고 確信한다.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에서 經營合理化를 要請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이다. 從前과 같은 前近代的方法에 의한 危險管理는 早速히 止揚되어야 하며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危險管理體系가 企業內部에 確立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大企業에서는 危險管理部나 保險部의 新設이 必要하며 이에는 保險專門要員의 養成이 時急하다. 中小企業에서는 保險代理人이나 保險仲介人の 效率的인 活用을 통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해야 할것이며 政府는 遲滯없이 行政的으로 企業에서 이와 같은 科學的인 危險管理를 할수 있도록 保險制度를 近代化시켜야 한다. 只今처럼 企業에서 危險管理를 값싼

몇 가지의 前近代的인 保險措置로 滿足할 時代는 이미 지난지 오래다고 보며 所謂리베이트를 保險者選擇의 第 1 條件으로 삼는 頗端은 하루速히 是正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保險需要者的 立場에서 保險이 왜 必要한가를 根本의으로 再檢討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企業은 危險管理制度를 導入하여 危險의 調査부터 着手하고 이를 통한 危險의 發見이 이루어지며 分析評價가 뒤 따라야 하고 合理的인 危險管理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保險需要者로서의 企業은 可能한限 保險市場을 國內에만 限定할 것이 아니라 國際市場에도 그 視線을 돌려 危險管理의 妙를 體得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또한 危險管理는 企業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企業과 密接한紐帶를 갖고 있는 家計에도 適用되어 家計의 合理化를 이룩하는데 利用해야 된다.

이와 같은 效率的인 危險管理는 長期眼目으로 보아서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통해서 企業의 國內乃至 國際競爭力を 強化시키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며 家計近代化에도 적지 않은 貢獻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 〈参考文獻〉

- Hardy, Charles O., *Risk and Risk-bearing* (Chicago; U. of Chicago, 1923)  
Pfeffer, Irving, *Insurance and Economic Theory* (Homewood, Ill.: Irwin, 1956)  
Willet, Allan,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Homewood, Ill.: Irwin, 1951)  
Knight, Frank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oughton, 1921)  
Clark, John. B., *The Distribution of Wealth*. (New York: Macmillan, 1899)  
Shackle, G.L.S., *Decision, Order and Time in Human Affairs* (New York: Cambridge, 1961)  
Weintraub, Sidney, *Price Theory* (New York: Pitman, 1956)  
Kulp, C.A., *Casualty Insurance* (3rd Ed.; New York: Ronald, 1956)  
Bang, Kap Soo, *A Proposed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an Analysis of Programs in Great Britain, Malay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oul: SNU Press, 1968)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The Growing Job of Risk Management*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62)  
Sinder, H.W., *Risk Management*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ress, 1964)  
Mehr, R.I. and R.A. Hedges, *Risk Management in the Business Enterprise* (Homewood, Ill.: Irwin, 1963)  
Blake, P.P., *Industrial Safety*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Heinrich, H.W.,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New York: McGraw, 1950)  
Hoffman, G.W., *Future Trading upon Organized Commodity Market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ress, 1932)  
Bang, Kap Soo and William Alrich, *Background for All-lines*. (Philadelphia: Spectator, 1962)  
方甲洙著, 保險學總論 (1963)  
方甲洙著, 社會保障論 (1964)  
方甲洙著, 危險與保險 (1971)